

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이용약관서 (피관리기업용)

(주)하나은행(_____지점, 이하"갑"이라 함)과 _____(피관리기업, 이하 "을"이라 함) 은 하나 글로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,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과 전자 금융거래 기본약관, 기타 관련된 업무의 약관을 적용한다.

제 1조(목적)

본 계약은 "갑"이 "을"에게 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(Hana Global Cash Management Service, 이하 "서비스"라 함)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정의)

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글로벌자금관리"라 함은 "을"의 "관리기업"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"갑"이 "을"의 신청을 승인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2. "관리기업"이라 함은 "을"의 계좌를 본 서비스를 통해 통합 관리하는 "을"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.
3. "피관리기업"이라 함은 "관리기업"의 사업장 및 현지법인이며, "을"을 말한다.
4. "계좌정보"라 함은 "을"의 계좌 거래내역과 잔액 정보를 포함한 금융정보를 말한다.
5. "수신기관"이란 "피관리기업"이 지정한 "계좌정보"를 수신할 수 있는, "관리기업"이 거래하는 은행 또는 "관리기업" 자신을 말한다.
6. "글로벌 계좌정보전송(Account Statements)"라 함은 "갑"이 "수신기관"으로 "피관리기업" 계좌의 "계좌정보"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3조(서비스 종류)

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.

- ① "글로벌 계좌정보전송" 서비스는 부속서류 3(글로벌 계좌정보전송 서비스 종류)의 내용을 따른다.
- ② 향후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"을"이 제공할 업무

제 4조(서비스 신청 및 변경)

- ① "을"은 서비스의 신규 신청 및 변경 시 부속서류 1[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이용신청서(피관리기업용)]과 부속서류 2[하나 글로벌 자금관리서비스 계좌등록 신청서(피관리기업용)]을 작성하여 "갑"에 제출한다
- ② "갑"은 "을"에게 "관리기업"과의 관계를 증빙할 서류를 징구 할 수 있다.

제 5조(이용수수료 등)

- ① 이용수수료의 요율 및 계산 방법은 "갑"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거래실적,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용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이용수수료와 제반 수수료는 "피관리기업"의 수수료 계좌에서 자동 인출한다

제 6조(서비스 이용의 정지)

- ① "갑"은 "을"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, "갑"은 "을"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.
 1. 관계법령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
 2.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연체하는 경우
 3. 고의적인 업무처리 절차 위반 등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"갑"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"갑"은 제 1항 각 호의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.

제 7조(서비스 계약기간)

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만료일은 계약 당해 년도 12월 31일로 정한다.

제 8조(서비스 해지 및 연장)

- ① "갑" 또는 "을"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"을"은 해지사실을 즉시 "관리기업"에게 통보한다.
- ② 제 6조 제 ①항의 사유로 이용이 정지되어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.
- ③ 제 ①항과 제 ②항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의 효력은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.

제 9조(면책)

"갑"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- 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
- ②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“갑”의 전산장애 등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
- ③ “갑”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의거 고의나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
- ④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각종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암호의 관리소홀 등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
제 10조(계약의 변경)

“갑”과 “을”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11조(관할법원)

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 12조(특약사항)

“갑”과 “을”은 아래의 사항을 특약으로 정한다.

본 계약의 진정한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
20 년 월 일

갑

을

사업자등록번호:
업체명: (주)하나은행

사업자등록번호:
업체명:


(법인인감)


(법인인감)

